

##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사업의 성과와 전망

강 현 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사업”은 06년 출발하여 10여 년을 경과하는 사이에 법령의 한글화와 순화정비에 많은 성과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법제처와 유관단체 및 학계의 꾸준한 연구성과와 노력을 집대성한 결과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성과는 법령용어에 관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해방 이후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꾸준한 노력의 결과라고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법령용어의 형성배경과 순화문제 및 법령문의 문장구조 및 기본 형식에 관한 이론적 연구성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실질적으로 수많은 용어와 문장이 법령문이라는 형식으로 쓰이고 있지만, 이에 관한 실질적이고 확립된 이론적 연구가 전무하다는 점에서 좋은 연구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와 더불어 법제처와 한국법제연구원이 법령용어 정비사업으로 추진한 성과와 향후 과제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법령용어 순화를 위한 연혁적인 연구로서 최근의 다양한 연구성과와 대비되는 역사적인 성과를 정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앞으로 법령용어와 문장에 있어서 집대성하고 정비하여야 할 목표에 관하여 다시 한번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러한 이론과 연혁적 연구를 바탕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성과에 관한 기본원칙과 정비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다. 기본원칙으로는 보다 쉬운 법령, 의미가 뚜렷하고 어법적으로 정확하며 표현이 자연스러운 법령을 만드는 것을 제시하였다. 정비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령문 표기의 한글화,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한자어와 표현, 외래어와 외국어, 권위적·차별적 용어에 대한 법령용어의 순화, 법령문장의 순화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법령용어와 문장에 관한 분석과 성과를 바탕으로 국어문법적 관점에서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방향성을 문법적 표현과 외래어와 외국어 수용, 전문용어의 규범적·기술적 수용에 대하여 그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이 향후 전문가의 참여에 제한되지 않고, 일반 국민이 보다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하여 검토한 의견을 함께 제시하였다.

**주제어:** 법령용어, 법령문장,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법언어, 법령용어 순화정비, 법제처

\*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hckang@klri.re.kr)

## 목 차

- I. 우리나라 법령용어의 형성과정과 순화문제
  - 1. 형성배경
  - 2. 법령용어의 형성과정과 순화문제
  - 3. 법령용어의 개념과 특성
  - 4. 법령문의 문장구조와 기본형식
- II. 법령용어정비사업의 추진실적과 향후과제
  - 1. 법령용어정비사업의 추진경과
  - 2. 법령용어정비사업의 추진
  - 3.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추진
- III.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사업의 기본원칙과 정비기준
  - 1. 기본원칙
  - 2. 정비기준
- IV. 결 론
  - 1. 국어문법의 구현
  - 2.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국민 참여방안
  - 3. 민·형법 등 기본법의 전면개정의 요청

## I. 우리나라 법령용어의 형성과정과 순화문제

### 1. 형성배경

우리나라 법령용어의 대부분은 외국 법령용어를 번역차용하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외국 법령용어에 대한 번역차용에 있어서 직접번역을 통한 차용이 아니라 일본이 외국 법령용어를 번역차용한 것을 재차용하였다는 것이 보다 정확한 표현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언어학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쓰이고 있는 법령에서의 용어는 차용어(Lehnwort, loan word)에 해당된다<sup>1)</sup>. 그러나

1) 이덕호, “언어차용에 관한 연구 I”, 『한글』 제169호, 한글학회, 1980, 223쪽 이하; 외래어와 차용어는 외래어휘로서 국어에 동화되어 고유어와 같이 된 어휘를 말한다.

차용어임도 불구하고 일본의 법령용어를 한자어의 음차형식으로 사용함으로써 오역과 부적합한 번역이 될 수밖에 없었으며, 부적합한 용어를 현재에도 그대로 쓰고 있다는 점은 지적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일본의 법령용어 계수방법은 번역차용의 방법을 활용하면서 방법론적 접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번째는 중국의 고전 등에 나오는 어휘를 활용하여 새로운 어휘를 만드는 방법이다<sup>2)</sup>. 이것은 고전에 나온 의미를 현대적 의미와 연결하여 한자적 조어력을 활용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sup>3)</sup>. 즉, 표의문자인 한자와 독일어의 추상적 법령용어를 연결하고 관련 용어의 생소한 조어를 이해가능한 용어로 변화시켜 쓰임에 있어서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식으로서 한자의 언어적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표의문자인 한자의 경우에는 비록 생소한 조어를 하더라도 그 의미가 어느 정도 이해될 수 있었던 것이며, 특히 일본이 독일법을 계수하기 시작한 이후에는 역시 조어력이 탁월한 것으로 알려진 독일어의 추상적인 법령용어를 번역차용하는 것에 한자의 조어력은 그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sup>4)5)</sup>. 또한, 일본의 법령용어 계수는 지식층의 유학에 대한 관심과 관료나 학자들의 권위주의 의식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sup>6)</sup>. 일본의 외국법의 계수에 있어서 중국의 고전은 새로운 의미부여와 조어에 필요한 지식의 활용에 매우 광범위한 요건을 제공한 것 역시 부인할 수 없다. 근대화 과정에 형성된 일본식 한자어(和製漢語)는 현재에도 우리나라의 법령용어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예컨대, 引渡(인도)·組合(조합)·株式(주식) 등의 법령용어는 한자어 음독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실제 의미에 있어서의 왜곡이 나타나는 용어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용어는 이미 우리 용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에서 순화대상으로 지적하는 것에 한계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sup>7)</sup>.

- 2) 임중호, “한국에서의 외국법의 계수와 법률용어의 형성과정”, 「외국법의 계수와 법령용어」(한국법제연구원 원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주최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 2002, 35-36쪽.
- 3) 碧海純一, “法學の文章と日本語”, 林大·碧海純一編, 「法と日本語」, 有斐閣, 1981, 123쪽.
- 4) 碧海純一, 앞의 글, 124쪽.
- 5) 임중호, 앞의 글, 36쪽.
- 6) 일본에서의 독일형법의 계수와 권위주의의 작용에 대해서는 이상돈, “법과 한국어”, 「법과 언어」(법제연구원한국법철학화고려대 법학연구원 공동주최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 2002, 59쪽; 명치시대 일본지성인들은 서양학문을 전통학문에 비하여 열등한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서양학문을 번역할 때는 서양학문이 어마어마한 것으로 보이기 위하여 일본인의 자연언어 또는 일상언어를 배제하고 심오한 분위기의 한문으로써 번역해야만 했다(김용욱, “철학의 사회성”, 「도올논문집」, 1991, 98쪽 이하 참조).
- 7) 임중호, 앞의 글, 37쪽; 김광해, “조망-국어에 대한 일본어의 간섭”, 「새국어생활」 제5권제2호(여름호), 국립국어원, 1995, 12쪽 이하.

## 2. 법령용어의 형성과정과 순화문제

외국법 계수방법은 원어의 직접차용(음역차용)과 번역을 통한 간접차용(번역차용)의 방법이 있다<sup>8)</sup>. 외국어의 차용은 간접차용이 일반적이며, 그 구체적인 차용방법은 차용직역, 차용의역, 차용의미, 차용창조 등으로 세분된다<sup>9)</sup>. 외국어 번역 역시 직역과 의역이 있지만, 접근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sup>10)</sup>. 차용직역(Lehnübersetzung)이란 외국어를 번역하여 자국 용어로 쓰는 것으로 원어의 형식적 모방을 통한 번역이 이루어진다. 특히, 차용직역 법령용어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법률행위(Rechtsgeschäft : 독), 동산·부동산(meuble-immeuble : 불) 등이 대표적이다<sup>11)</sup>. 차용의역(Lehnübertragung)이란 외국 법령용어를 모방에 기초하여 자국의 용어로 쓰는 것으로서 번역에 있어서 가장 자주 활용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예를 들면, 신의성실(bona fides : 로마), 復代理人(Untervertreter:독 ↔ 複代理人), 집중투표(cumulative voting:영 ↔ 누적투표:일) 등이 대표적이다<sup>12)</sup>.

차용의미(Lehnbedeutung)란 기존 용어에 외국 용어의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용어를 번역하여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번역에 쓰이는 용어는 주로 중국 고전이나 한시를 근거로 활용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법률(Gesetz:독, loi : 불 ↔ 법+울)<sup>13)</sup>, 권리(right : 영 ↔ 權利)<sup>14)</sup>, 의무(duty, obligation : 영)<sup>15)</sup>, 이사·사외이사(일본은행조례 제17조 : 1882년)<sup>16)</sup> 등의 용어이다<sup>17)</sup>. 차용창조(Lehnschöpfung)란 외국 용어에 대체하여 필요한 용어를 새롭게 창조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대통령<sup>18)</sup>, 회사(회+사 ↔ 사회)<sup>19)</sup> 등의 용어가 있다.

그 밖에 직접차용(Direktentlehnung)에 따라 성립된 법령용어는 용어를 언어의

8) 임중호, 앞의 글, 37쪽.

9) 이덕호, 앞의 글, 254쪽 이하.

10) 언어학적 측면에서의 번역이론에 관해서는 김윤한, “번역의 개념과 언어학적 번역론”, 『인문논총』 제42집, 서울대 인문학연구소, 1999, 117쪽 이하 참조.

11) 구체적인 번역의 과정과 내용에 대하여는 임중호, 앞의 글, 38쪽 이하 참조.

12) 구체적인 의미와 해설에 관하여는 임중호, 앞의 글, 41쪽 이하 참조.

13) 莊子 徐無鬼 “法律之士廣治”

14) 荀子 權學編 “是故權利不能傾也”; 大久保泰甫, “法の繼受と言語”. 앞의 책 『法と日本語』, 162쪽.

15) 論語 擁也 “務民之義”

16) 이사라는 어휘 자체는 불교의 理事(본체와 현상 : 사리와 동일한 의미)에서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摠郷正明 飛田良文 편, 明治のことは辭典, 東京堂出版, 1986, 589쪽 이하).

17)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임중호, 앞의 글, 45쪽 이하 참조.

18) 송민, “대통령의 출현”, 『새국어생활』 제10권4호(겨울호), 국립국어원, 2000, 107쪽 이하.

19) 동일어의 도치에 의한 용어의 창조의 예를 들면, 결의와 의결, 합병과 병합, 증서와 서증 등이 있다.

형태로 받아들여 사용하는 것으로 외국 용어나 사물의 명칭에 대한 번역용어가 없는 경우, 직접차용의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 최근의 정보화 과정에서 쓰이는 기술적 용어와 정보화 관련용어는 직접차용의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된다. 예를 들면, 컴퓨터, 프로그램, 인터넷, 데이터베이스 등의 용어가 이에 해당한다. 이 용어는 현재 외래어로서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정착된 단계라는 점에서 순화대상으로 하는 것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분야이기도 하지만, 용어의 쓰임의 혼란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방지하는 것 역시 문제라고 할 것이다<sup>20)</sup>.

### 3. 법령용어의 개념과 특성

#### (1) 의의

법령용어란 일상생활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거나 의미의 차이가 있는 용어에 대하여 법령에서 특별한 의미로 쓰이는 용어를 의미한다<sup>21)</sup>. 하지만, 법령용어가 일상에서 전혀 쓰이지 않거나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는 뜻은 아니며, 일상 용어와 차별성을 확인하기 위한 의미로 쓰이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법령용어를 구체화하고 그 범위와 내용을 확정하는 것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법령용어는 법령에서 쓰이는 용어의 뜻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의 문제이면서 법령만의 특별한 용어가 존재할 수 있는가를 파악하는 노력이기도 하다. 법령이 가지는 복잡성과 전문성 및 기술성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일상용어와의 차별성을 확인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 역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법령용어는 입법기술에 있어서 의미 차이와 조문구조의 명확화는 물론 조문상호간의 관계를 역시 명확하게 구성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야 하며, 법문에 있어서 표현은 간략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sup>22)</sup>.

법령용어와 관련된 구체적인 실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23)</sup>.

20) 임중호, 앞의 글, 56쪽.

21) 박영도, 법령용어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1995, 59쪽.

22) 자세한 내용은 박영도, 앞의 책, 60-61쪽 참조.

23) 법령용어 사용의 실례와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전체적인 내용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7판), 2016의 내용을 정리한 것임.

## (2) 법령의 상용문자

법령에서 쓰이는 문자는 각국의 고유한 문자로 표현되며, 우리 법령의 상용문자는 「한글」을 그 표현문자로 사용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어기본법」 제14조(공문서의 작성)제1항은 “공공기관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1조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는 경우로 ①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로 하고 있다.

## (3) 숫자·외래어 및 부호

### 1) 숫자

현재 법령에서 쓰이는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원칙으로 한다. 예외적으로 숫자가 천단위 이상이면 한자 또는 한글로 표시할 수 있다. 그러나 별표 등에서 도표로 표시할 때에는 천단위 이상의 숫자도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할 수 있다. 숫자사용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의 표현은 1천, 1만, 1억 등으로 표현하며, 서수는 「제」자를 붙িয়ে 표현한다<sup>24)</sup>. 봉급표나 정원표 등에는 아라비아 숫자를 쓰며, 단위구분으로서 「배」는 1배, 2배 등으로 표현한다. 분수는 2분의 1, 3분의 2 등으로 쓰며, 기일 또는 기간은 1개월, 2년 등으로 표시한다.

### 2) 외래어

외래어나 외국어는 원칙적으로 우리말로 바꾸어 쓴다. 적절한 우리말이 없으면 어문 규정에 따라 외래어나 외국어를 한글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원어(原語)를 함께 적을 수 있다. 외래어나 외국어를 바꾼 우리말이 생소하거나 어감의 차이가 있어면 그 용어가 처음 나오는 곳에서 한 번, 그 용어의 한글 표기와 원어(原語)를 함께 쓸 수 있다.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다.

법령의 외래어 사용은 언어정책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지만, 일상용어의 쓰임을 법령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령과 현실의 용어괴리가 발생하고, 무분별하게 쓰이는 경우에는 공식적인 언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언어의 세계화를

24) 「제○장」, 「제○조」, 「제○항」 등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을 전면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것 또한 현실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 바로 법령용어에 있어서 외래어 활용의 문제이기도 하다<sup>25)</sup>.

### 3) 부호

법문의 부호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에 따르지만, 법문에만 쓰이는 법칙이 있다. 먼저 ‘마침표와 쉼표’는 부호라기보다 문구와 의미상의 연관을 가지면서 일체화된 문자로 작용한다. 법문에서 마침표는 호나 목이 명사·대명사 등으로 끝나면 마침표를 찍지 않지만, 계속 단서로 이어지면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호나 목 또는 그 단서가 서술문으로 끝나면 다시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그러나 쉼표는 그 사용법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둘째, 법령의 ‘부호’ 중 가운데점(·)·반점(,)·쌍점(:) 및 빗금(/) 등이 있다<sup>26)</sup>. 가운데점은 - 원칙적으로 두개의 단어가 연결된 경우에는 ‘및’ 또는 ‘또는’을 사용하여야 하지만 - 유사한 의미를 가진 단어를 연결할 때와 의무상의 선후관계 등 연관성을 갖는 단어를 연결할 때 가운데점을 사용한다. 반점은 문장안에서 짧은 휴지를 나타내는 부호로서 주로 띄어쓰여져 있는 구절 또는 문장을 계속 연결할 때 많이 사용한다는 점에서 가운데점과 구별되며, 쌍점은 종류의 구분, 설명 등을 할 때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별표와 별표서식에서 주로 사용된다는 차이점이 있다<sup>27)</sup>.

셋째, 부호 중 ‘괄호’는 가로쓰기는 작은 따옴표, 세로쓰기는 낫표(「 」)가 원칙이지만, 법문에서는 낫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법령 제명 띄어쓰기가 일반화되면서 제명을 일체성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낫표를 쓰고 있다. 그리고 괄호(( ))는 소괄호·중괄호·대괄호가 있다.

### 4) 띄어쓰기

#### 가. 법령 이름 띄어쓰기

법명은 단일한 고유명사로 보아 모든 단어를 붙여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에 우리 법령에서 최대 83자<sup>28)</sup>의 법령 이름도 하나의 단어로 취급한 경우도 있었지

25) 외래어 및 사이버관련 법령용어의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법제연구원, 사이버법령에서의 법령용어 및 문장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법제연구원-한국인터넷법학회 공동워크샵 자료집, 2003. 참조.

26) 법문에서는 빗금을 제외한 나머지 3가지 쉼표를 사용한다(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1996, 169쪽.)

27)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1989, 14쪽; 앞의 책, 1996, 169-171쪽.

28)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 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의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

만, 2005년 이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일환으로 법령 제명 띄어쓰기를 추진하여 제명은 어법에 맞게 띄어쓰기 시작하였다. 또한 본문에서 제명은 다른 문장과 구별하여 법령 제명에 낫표(「」)를 쓰도록 하였다.

#### 나. 법령문의 띄어쓰기

법령문의 띄어쓰기는 한글맞춤법에 따르지만 고유명사와 전문용어는 법령 이름 띄어쓰기의 원칙이 적용된다. 성명 외의 고유명사나 전문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쓰되(원칙),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원칙적으로는 “대한 중학교”이지만, “대한중학교”도 허용하는 것이다.

### 4. 법령문의 문장구조와 기본형식

#### (1) 법령문의 특색과 문장구조

##### 1) 법령문의 특색

법령문은 법규범을 문장화하는 것으로서 문장구조에 있어서 논리성·추상성·간결성·명확성·유형성 등 많은 특색을 가지고 있다<sup>29)</sup>. 법령문은 요건과 효과만을 기술하며, 문장은 1조1문주의의 원칙을 적용받고 있다. 이에 따라 법령문의 특유의 엄격한 원칙과 입법기술에 따른 일정한 형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sup>30)</sup>.

##### 2) 법령문의 문장구조

법령문은 원칙적으로 1조1문주의가 적용되지만, 각각의 문장에 있어서 단서의 경우에는 별도의 문장을 구성할 수 있으며, 간단한 법령은 조의 구분 없이 서술하는 경우도 있다<sup>31)</sup>. 법령문에 있어서 주어는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지만, 생략하거나 목적어를 주어와 같이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술어는 일상적 표현으로 사용하지만, 법문의 특성을 반영한 표현을 활용하기도 한다<sup>32)33)</sup>.

29) 박영도, 앞의 책, 28쪽.

30) 우리 현행법령에서 정형화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는 「과태료규정」, 「청문규정」, 「양벌규정」, 「과징금규정」, 「부담금규정」, 「벌칙 및 통고처분규정」, 「결격사유규정」, 「공무원의제규정」, 「위원회규정」 등이 있다. 자세한 것은 대한민국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률안심사사례집-체계·형식·자구-, 1993, 147-161쪽 참조.

31) 예를 들면, 「년호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32) 「할 수 있다(없다)」, 「하여야 한다, 하여서는 아니된다」, 「한다, 하지 아니한다」, 「예에 따른다, 정하는



## (2) 법령문의 기본형식

법령의 문장은 일정한 형식이 없지만, 순서배열의 원칙과 경제적 표현의 원칙 등이 요청된다<sup>34)</sup>. 이러한 원칙에 따라 적절한 분배의 문제와 유형별 분류의 문제 및 통일적 순서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sup>35)</sup>. 성문법 체계에서는 법령형식에 필요한 기준이나 지침을 마련하여 법령입안시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sup>36)</sup>. 법제처는 「법령입안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국회는 「법제실무」 등을 발간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법령문은 크게 본칙과 부칙의 구분하며, 그 구체적인 체계는 편·장·절·관·목으로 세분하여 구성된다<sup>37)</sup>. 법령문의 배열방식은 제명·목차·전문·본칙·부칙 등으로 구성되며, 각 해당 법령의 내용에 따라 배치하고 있다<sup>38)</sup>.

바에 따른다», 「추정한다, 본다», 「준용한다, 적용한다」 등의 표현이 있다.

- 33) 술어의 법령내 구체적 적용사례에 관하여는 박영도, 앞의 책, 31-33쪽 참조.
- 34) 박봉국, 「입법의 이론과 실제」, 입법조사월보, 국회도서관, 1989. 1., 11쪽 참조.
- 35)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것은 박영도, 입법이론연구(I)-입법기초이론과 입법기술-, 한국법제연구원, 1991, 187-189쪽 참조.
- 36) 미국의 경우는 각 주의 헌법에서 제정문의 형식, 주제, 용어의 표현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법제사무처리의 행정적 기준으로서 「OMB규정 4019」를 두고 있다. 또한 프랑스에서는 법률안 및 법령작성에 관한 수상훈령으로 그 지침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내각법제국에서 발간한 「法令審査事務提要」가 있다.
- 37) 부칙을 조로 구분하는 경우 그 조의 조명에 대하여는 본칙과 같이 조명을 붙이는 방법과 부칙은 부칙대로 따로 조명을 새로이 붙이는 방법을 채용하고 있으나, 현재는 본칙에 이어서 조번호를 붙이지 않고 따로 조명을 새로이 붙이는 방법을 채용하고 있다.
- 38) 법령문의 내용적 배열방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박영도, 입법이론연구(I), 187-279쪽 참조.

## II. 법령용어정비사업의 추진실적과 향후과제

### 1. 법령용어정비사업의 추진경과<sup>39)</sup>

#### (1) 구법령정리사업

법령용어순화 정비사업은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우리 법령의 시행에 따른 제헌헌법의 입법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구법령정리사업’을 시작한 것이 그 출발점이라 할 것이다. 구법령정비사업은 본질적으로 구한말에 제정되어 시행된 법령과 일제시대 조선총독부에 의하여 제정되어 적용된 법령은 물론 미군정기에 제정된 법령을 헌법체계에 적합하게 적용하고 체계화하기 위한 작업을 의미한다. 구법령은 새로운 시대의 입법정신에 맞지 아니하며, 용어와 문장 등이 부정확한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신속한 정비가 필요한 영역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정리사업은 전쟁 등의 혼란으로 그 성과가 나타나지 못하였으며, 본격적인 추진은 1960년대에 이루어지게 된다.

구법령정비사업은 먼저 1948년에 기본법 제정과 관련한 특별기구로서 「법전편찬위원회직제(1948. 9. 15 대통령령 제4호)」를 제정하여 법령편찬위원회가 설치되었다<sup>40)</sup>. 이후 1951년에는 법전편찬위원회에서 시행하던 구법령의 유·무효를 조사·심의하고 이에 대체할 새 법령의 기초를 준비하며, 통일된 법령집의 편찬·발간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령정리간행위원회(1951. 5. 12. 대통령령 제499호)」를 설치하였다<sup>41)</sup>. 또한 6·25사변 중에 거의 중단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법령정리간행위원회의 규정을 개정하여 「법령정리위원회(1956. 7. 19. 대통령령 제1169호)」를 두었으며<sup>42)</sup>, 400여건의 구법령 정비<sup>43)</sup> 및 법문내용의 표기에

39) 법령용어정비사업의 추진경과와 관련한 내용은 박영도, 앞의 책, 112쪽 이하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는 바 이를 기초로 하여 본고에서는 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고, 최근(2000년 이후)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과 국립국어연구원 등의 법령용어정비사업의 진행과정과 내용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40) 위원장에는 김병로가 임명되었으며, 위원은 기초위원과 일반위원으로 나누어 졌다. 일반위원에는 법률가만이 아니라 경제학자, 사학자, 교육학자 등 학계의 대표들도 참여하였다. 법전편찬위원회는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 각법별 개별분과위원회와 기초위원을 두고 이에 일반위원을 배속하는 것으로 하였다. 하지만 법전편찬위원회의 활동뿐 아니라 민법, 형법 등 기본법의 제정과정에 대한 자료 등이 제대로 남아있지 않고 또 남아있는 것조차 제대로 정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와 관련된 자료의 종합적 정리와 발간이 요청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장명근, “현대법제의 역사적 형성과정”, 「저스티스」 제27권제2호, 한국법학원, 1994, 126-127쪽 참조.

41) 동 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고 법제처장을 부위원장으로 하여 위원회의 실무를 법제처가 담당 하였으나 당시 6·25사변 중이어서 예산조치가 없어 이렇다 할 업적은 없었다(법제처, 법제처40년사, 1988, 127쪽).

42) 동 위원회는 법제실(1955. 2. 7. 법 제354호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법제처가 법제실로 명칭을 바꿈)

있어서도 큰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되고 있다<sup>44)</sup>.

5·16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는 구법령정리사업을 조속히 마무리짓기 위하여 「구법령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1. 7. 15. 법 제659호)」를 제정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내각수반 감독하에 「법령정리위원회」를 두어 위원장은 내각사무처장(1961. 10. 법제처설치후 법제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법제처장으로 하여 1962년 1월 말까지 약 5개월 동안 400여 건의 법령을 새로이 제정하고 500여 건의 구법령을 폐지하는 등 구법령정리사업을 마무리하였다<sup>45)</sup>.

## (2) 법령의 한글화 추진

법령의 한글화를 위한 노력은 한글전용에 관한 정책적 추진방향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1948년 정부수립 후 제6호 법률로서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에 제정되었으며, 이 법은 “대한민국의 공용문서는 한글로 쓴다. 다만, 얼마동안 필요한 때에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지만, 예외의 인정 등으로 그 효과에는 많은 한계가 있었다. 법령의 한글화 사업은 1962년 헌법(1962. 12. 26.)제정 당시 알기 쉬운 헌법을 마련하였던 것이 커다란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sup>46)</sup>.

### 1) 법령의 한글·한자표기기준 설정

정부에서는 1969년 5월 1일 「법령의 한글·한자표기기준」을 설정하고 앞으로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서 한글로 표기하기로 하고, 이미 제정된 부령은 1969년 8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은 1970년 12월 31일까지 한글화작업으로 마치고 법률에 대하여도 한글화하도록 노력하였다<sup>47)</sup>. 그리하여 정부의 모든 공문서를 비롯하여

소속하에 법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법률학을 전공한 국회의원·법조계·행정공무원 기타 법률학교수 등 10인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전문위원·참사 등을 임명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함.

43) 당시 정리된 400여 건을 법령별로 보면 구일본법률 30건, 구제령 73건, 구칙령 25건, 구총령 218건, 기타 일제때의 제법규 20건, 군정법령 46건 및 기타 군정법규 5건 등이다(법제처, 법제처40년사, 1988, 127쪽 참조).

44) 법제처, 법제처40년사, 127-128쪽.

45) 구법령정리사업은 불과 165일동안 193건의 법률과 250일동안 각령 196건을 제정하여 총389건의 법령을 제정하였고, 618건의 과거법령을 폐기하였다. 그러나 이 당시의 구법령정리사업은 지나치게 신속성을 강조한 나머지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아니하고 법령을 정리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법령용어의 정비도 병행하였으나 충분한 검토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자세한 내용은 김용진, 앞의 글, 38쪽 이하 참조).

46) 제헌헌법에서 한자를 사용하던 것을 1962년헌법에서 한글로 표기한 용어 중 대표적인 것을 예를 들면 ①定한다→정한다, ②如何한→여하한, ③爲하여→위하여, ④依하여→의하여, ⑤對하여→대하여 등이 있다.

47) 법령의 한글화작업에 따른 용어정의의 구체적인 자료는 법제처, 법령의 한글화작업에 따른 용어정리, 1973. 7., 참조.

법령도 한글로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공문서규정(1969. 5. 2. 대통령령 제 3923호)」을 개정하고 법규문서의 표기에 있어서도 한글로 띄어서 가로쓰며, 한글맞춤법의 원칙에 따르도록 하였다. 이러한 법령의 한글화추진은 1970년말까지 대통령령 1,924건, 총리령·부령 748건 등 총 1,722건에 이르렀으나 법률의 한글화는 결국 실현되지 못하였다<sup>48)</sup>.

## 2) 법령용어정비요강의 제정

법령을 한글로 표기하는 방안에 대하여 한자용어를 한글로 바꾸어 표현하되, 한자용어는 가능한 우리말로 순화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순화하도록 하였다. 한자의 경우에는 어려운 용어나 해석상 논란이 있는 용어 등을 중심으로 순화가 추진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에서 「법령용어정비요강」을 69년 5월에 마련하여 지침으로 발표하였다.

## (3) 법령용어정비기준의 제정·추진

1972년 7월에는 법령정비작업의 일환으로 「법령용어정비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순화정비 작업을 진행하였다. 73년 7월에는 구체적인 용어 통일 방법에 관하여 「법령용어의 통일<sup>49)</sup>」에 관한 사항을 지침으로 만들어 발간·배포 하였다. 이러한 기준과 방법론을 기초로 진행된 법령용어정비업무는 다양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여 1983년 4월에 2차로 「법령용어순화정비기준」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이 기준은 기존의 정비기준에 일본식 표현 순화정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보다 쉬운 우리말로의 순화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 (4) 법령정비사업의 성과

구법령정비위원회에 따른 법령정비사업과 한글화 추진 및 법령용어정비 등의 사업은 현대적 용어와 문장으로의 변화와 순화에 많은 성과를 달성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1977년부터 2년간에 걸쳐 모든 법령을 1차적으로 검토하여 288개

48) 국무총리훈령 제68호(1968. 12. 24)에 의하여 1970년 1월 1일부터 한글전용을 지시한 바 있으며, 정부에서는 법률도 한글전용을 추진하였으나 1973년도 법제처장입회하에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회 의원의 요청과 반론에 의하여 한자혼용의 방침을 정한 것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권영민, 입법실무, 연수사, 1977, 31쪽).

49) 이 기준은 법령상의 관용어사용 원칙·법령상의 외래어·한글바로쓰기·법령한글화작업 채택용어·참고자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령에 대한 정비안을 작성하였으며, 그 결과 부처협의 등을 거쳐 154개 법령을 정비하고, 131개 법령은 법령 개정을 통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정비사업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 2. 법령용어정비사업의 추진

### (1) 용어정비 추진절차

법령용어의 정비를 위하여는 대상이 되는 법령용어에 대하여 수집단계, 검토단계, 확정단계를 거쳐 추진된다<sup>50)</sup>. 수집단계는 법령을 전수조사하여 관련 대상용어를 선정하여 그 적절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단계이다. 수집단계에서 선정된 용어는 관련 단계와 기관 및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보다 깊이 있는 사회적 논의를 거치는 과정이 검토단계이다. 이러한 검토단계를 거쳐 수집단계에서 선정된 용어의 적절성과 타당성에 대한 최종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후 순화용어로 정하는 과정이 확정단계이다. 확정된 대상용어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법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1) 정비대상용어의 선정

법령용어에 대한 순화대상은 일상생활용어와 고유한 법령용어로 나누어 추진된다. 일상생활용어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용어를 중심으로 그 대상을 선정하며, 고유한 법령용어는 절차적 과정을 거쳐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먼저 법령용어심의회 심의를 거치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친 이후에 관계 부처 협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모두 거친 이후에 행정용어순화위원회의 최종적인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최종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대상용어의 선정은 '법제처 자체정비안'과 '관련 기관 정비안'으로 나누어 추진된다.

#### 2) 정비대상용어의 관련기관 검토 및 공고

자체정비안과 관련 기관 정비안은 정비대상 용어자료집을 발간하며, 이후 관련 기관과 전문가 검토 등을 거친 후 법령용어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확정된 '법령용어순화정비자료집(안)'은 다시 한 번 정부 행정용어순화위원회에 통보하고 위원회 의결 후 관보공고가 이루어진다. 이 공고는 국민 일반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러한 의견을 취합하여 새롭게 정리한 후 국무회의에 보고

50) 박영도, 앞의 책, 122쪽 이하 참조.

하여 최종 확정하도록 하였다. 확정된 법령용어는 「법령용어순화편람<sup>51)</sup>」에 반영하여 활용하도록 하였다.

## (2) 세부추진내용과 실적

### 1) 법령용어정비의 기반조성(1983-1986)

법제처에서는 1983년부터 법령용어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작업추진은 법령에 따라 소관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개선대상 법령용어는 심의회에서 77심의회한 후 확정하도록 하였다<sup>52)</sup>. 이후 1983년과 84년의 작업결과에 따라 1985년 법령용어순화편람 제1집을 발간하고, 1986년 법령용어순화편람 제2집을 발간하였다<sup>53)</sup>.

### 2) 법령용어의 민주화추진(1988-1990)

이 기간은 개정헌법에 따라 새로운 민주화 이념 등을 반영하여 대폭적인 법제개혁이 이루어지는 기간으로서 법령용어에 있어서도 기존의 순화방안을 근본적으로 변화하여 용어는 물론 문장의 표기방법 등에 대하여 순화정비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법령용어 및 문장의 순화정비의 근본적인 변화과정을 반영하여 살펴보면, 이 기간을 ‘법령용어의 민주화 추진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sup>54)</sup>.

이에 따라 법제처에서는 ‘법령용어순화정비대상자료집’을 발간하고, 법무부제출 정비의견은 주로 ‘용어의 민주화’ 측면에서 진행하였으며, 재무부제출 정비의견은 주로 ‘용어의 명확화’에 많은 비중을 두었다<sup>55)</sup>. 이러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제처는 1820여 건(1986년 이전 정비 1,180건, 1990년 추가 640건)의 용어가 수록된 ‘법령용어순화편람’ 제3집을 발간하였다<sup>56)</sup>.

51) 법령용어순화편람은 1985년 제1집이 법제처에서 발간된 이후 2002년에 제7집이 발간되었다. 동편람은 1996년 발간된 제6집까지 총 4,378개의 법령용어를 수록하였으며, 2002년에 발간된 제7집은 필수정비대상용어 2,068건을 선정하여 발간하였다.

52) 일상생활공용법령용어정비는 자체정비안 99개 법률 445개, 관련부처정비안 187개 법률 481개 등 총 286개 법률의 926개 순화정비용어를 선정하였으며, 고유법령용어정비개선은 695개 법령용어를 선정하고, 대체용어를 검토하였다.

53) 법령용어순화편람 제1집은 법률에서 추출한 대상용어 1,360여개 중 1,000여개의 용어를 선정하였으며, 제2집은 220여개의 대통령령에서 180여개의 대상용어를 재선정하여 발간하였음.

54) 박영도, 앞의 책, 128쪽.

55) 이외에도 교통부 31건, 동력자원부 28건, 농림수산부 22건, 내무부 20건 등 25개 기관에서 총 395건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56) 법령용어순화편람에는 ① 법령용어순화정비자료 1,820건, ② 법령에서 한글·한자사용기준 550건, ③ 헌법에서 한글사용례 171건, ④ 법령의 한글화작업시 채택용어 172건, ⑤ 법령의 한글사용례 782건 등 총 3,495건이 수록되었다.

### 3) 법령용어의 한글화 및 외래어정비(1991-1992)

용어와 문장의 민주화 추진과정을 거쳐 1991년부터는 어려운 한자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는 용어의 평이화의 관점에서 법령용어정비사업이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국립국어연구원의 국어순화자료집을 참고하여 한자용어와 일상용어 및 외래어 용어 등 모두 1,176건을 수록한 ‘정비대상용어자료집(안)’을 1991년 4월에 발간하였다.

### 4) 법령용어의 표준화·명확화(1993-1994)

법제처에서는 ‘용어의 표준화·명확화’와 ‘외래어의 정비’를 위하여 총 1,020건의 용어<sup>57)</sup>를 선정하여 ‘법령용어정비대상자료집(안)’을 발간하였으며, 이를 대상으로 국회·법원·중앙 및 지방행정기관 등의 검토의견과 각계 전문가의 자문 및 법령용어심의회<sup>58)</sup>의 심의를 거쳐 1994년 법령용어순화편람 제5집을 발간하였다<sup>59)</sup>.

### 5) 법령용어순화작업의 검토와 지속화와 다각화(1994 이후)

법령용어순화작업은 법령용어순화편람 제6집(1996)을 발간하여 순화작업의 내용을 정리하고, 법령을 통한 용어 순화의 최종적 단계를 법령개정반영에 두고 이를 법령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법제처에서는 필수정비대상용어 2,068건을 선정하여 법령용어순화정비편람을 발간하고, 법제처만의 법령용어정비순화작업의 충실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정부출연연구기관과 함께 순화정비사업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그 대표적인 연구작업의 성과가 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정비사업단’<sup>59)</sup> 창설이었으며, 이 사업단은 독립 연구팀으로 운영됨으로써 실무적 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문학과 법학계의 학문적 성과와 검토를 거쳐 순화정비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다<sup>59)</sup>. 이와 더불어 국립국어연구원은 국어학 분야에서 법

57) 법령용어(일상용어 포함) 772건 및 1993년 2월 1일 이후 공포된 법령을 대상으로 110건, 외래어 138건 등이다.

58) 법령용어순화편람 제5집에는 법령용어순화정비자료 3,880여건, 법령에서 한글·한자 사용기준 550건, 헌법에서 한글사용례 171건, 법령의 한글사용례 782건 등 전부 5,383건이 수록되어 있다.

59) 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사업단의 중요성과물로서는 실무와 학계가 공동으로 집필하는 법령용어에 대한 해설집으로서 2000년 이후 계속 발간되고 있는 ‘법령용어사례집’과 법령용어에 관한 국제학술회의(법과 언어, 2001; 외국법의 계수와 법령용어, 2002) 및 전문가회의의 자료집(법령용어 및 문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002. 5.; 현행법령용어에 대한 역사적 고찰, 2002. 7.; 개정민사소송법의 법령용어 및 법률문장의 순화와 향후과제, 2003. 4.), 워크샵자료집(사이버 법령에서의 법령용어 및 문장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003. 5.) 등을 통한 학문적 성과를 축적하였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 연구자료로서 법률문화 및 법령용어에 관한 국민여론조사, 입법학용어해설집, 일본어식법령용어사례집 등을 발간함으로써 다양한 연구성과물을 축적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작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있다.

령용어 순화와 관련된 연구<sup>60)</sup>를 꾸준히 시행하여, 실무적으로 축적된 경험과 학문적으로 논의된 성과를 접목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나아가 기존 연구와 성과를 바탕으로 법제처 및 각 연구기관간이 연구결과물 및 성과물을 공유하여 합리적인 법령용어의 정비와 순화를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되기도 하였다.

### 3.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추진<sup>61)</sup>

#### (1) 추진 경과

법제처 등 국가기관과 개별 연구기관에서 추진한 법률 한글화 사업과 법령용어 순화사업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제처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2006년부터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업은 법령정비차원으로 법령용어와 법령문장의 근본적 체계변화를 위하여 추진하였으며, 기존의 법령용어 순화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적극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었음을 의미한다. 실무적인 관점에서 이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법제전문기관인 법제처가 국어전문가와 함께 법령심사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장기적인 5개년 계획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사업으로서 추진되었음을 의미한다.

#### (2) 성과

이 사업은 1단계로 국회의 입법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법률이 아닌 정부 내 추진 가능한 하위법령을 대상으로 먼저 정비를 추진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총 2,760건의 하위법령을 정비하였다. 2013년 이후부터 국민생활에 보다 밀접한 연관이 있는 민상법과 소송법 등의 한자 표기, 일본식 한자어 등의 순화정비를 시작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13년에는 「민법」, 2014년에는 「형법」, 2016년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주요 법률에 대한 정비의견을 계속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순화사업의 보다 나은 성과를 위하여 부처간의 협조와 협업을 통하여

60) 국립국어연구원을 중심으로 한 국어학계의 법령용어순화작업은 논문 및 발표회 등을 통하여 매우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최근 법조문의 문장실태조사(2001), 법령문의 국어학적 검토(2002) 등의 자료집을 통하여 보다 체계적인 작업이 시행되고 있다.

61) 이에 관한 내용은 법제처, 알법 10주년백서, 2016에서 발췌하여 정리한 것임.



용어와 문장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전문용어와 차별적 용어, 권위적 용어에 대한 정비의견이 제시되어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중앙정부의 법령뿐만 아니라 자치법규와 행정규칙 및 약관에 관한 정비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증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비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 〈연도별 정비 추진 현황〉

(2016.8.31. 기준)

구분	법률		하위법령
	국회제출	국회 통과	
2006년	63건	60건	49건
2007년	216건	122건	213건
2008년	229건	209건	308건
2009년	245건	220건	309건
2010년	224건	172건	227건
계(2006년~2010년)	977건	783건	1,106건
2011년	-	-	408건
2012년	30건	30건	475건
2013년	47건	35건	771건
2014년	32건	25건	265건
2015년	11건	4건	109건
2016년	9건	-	77건
총계	1,106건	877건	3,211

### Ⅲ.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사업의 기본원칙과 정비기준<sup>62)</sup>

#### 1. 기본원칙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기본원칙은 쉬우면서도 그 의미가 뚜렷하고, 어법적으로 정확하며 표현이 자연스러운 법령을 만드는 것이다. 쉬운 법령이란 모든 법령문을 한글로 표기하고,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한자어, 어려운 전문용어, 외국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는 것이다. 뚜렷한 법령은 명확하고, 논리에 어긋나지 않으며, 나타내려는 뜻이 한눈에 보이는 표현으로 정비하는 것이다. 반듯한 법령은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등의 어문 규정을 충실히 지키는 것이다. 자연스러운 법령은 어색한 문어체나 번역체 문장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친숙하고 매끄러운 문체로 다듬는 것이다.

#### 2. 정비기준

##### (1) 법령문 표기의 한글화

법령 중에 한자로 표기된 것은 한글로 고쳐서 쓴다. 다만, 한글로 표기해서는 이해하기 어렵거나 그 뜻이 분명하지 않은 용어나 법 문장의 내용에 따라 한자 표기가 다른 동음이의어는 한자를 병기한다.

2005년 이후 법령문 표기의 한글화는 모든 법령에서 구현되어 시행되고 있다.

##### (2) 법령용어의 순화

법령 용어의 순화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한자어, 지나치게 줄여 쓴 말, 권위적이거나 비민주적인 용어 등 정비할 필요가 있는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용어를 정비할 때는 그 용어에 해당하는 순 우리말(고유어)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말로 정비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쉬운 한자어,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쉬운 용어를 골라 어법에 맞게 반듯하게 정비한다.

##### 1) 어려운 한자어

일상에서 잘 쓰지 않거나 어려운 한자어는 고유어로 순화하거나 널리 쓰이는 쉬운

62) 이 내용은 법제처에서 발간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2016)의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한 것임을 밝힌다.

한자어로 정비한다(예시1). 이때 ‘어려운 한자어’인지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의 눈높이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적절한 순화 용어가 없으면서 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제한적이고, 그 법령을 자주 찾아보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해당 용어가 일반적이고 어렵지 않은 경우에는 무리해서 순화하지 않는다(예시2). 이때 필요한 경우에는 한자를 같이 쓴다. 또한, 고유어가 원래 용어의 법적 의미 그 자체를 완전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 고유어로 무리하게 순화하면 법령의 내용 변경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한자어를 그대로 사용한다(예시3).

예시1) 압거-지하도랑, 사위(詐僞)-거짓 · 속임수, 주말(朱抹)하다-붉은 선으로 지우다

예시2) 저인망(底引網)

예시3) 양도(讓渡)하다(0)-넘겨 주다(×)

## 2) 일본식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란 일본 사람들이 한자로 적고 뜻으로 읽는 것(訓讀)을 그대로 옮겨서 사용하는 한자어를 말한다. 우리 법령에는 일본 법령의 영향으로 일본식 한자어가 산재해 있어, 우리말의 고유성을 해칠 뿐 아니라 법령을 더욱 어렵고 일상 언어와 동떨어지게 하는 요인이 되어 왔다. 일본식 한자어도 어려운 한자어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고유어가 있으면 고유어로 정비하고, 해당하는 고유어가 없는 경우에는 익숙하고 쉬운 한자어를 중심으로 정비하였다.

예시1) 일부인(日附印)-날짜 도장, 구배(句配)-기울기 · 경사

예시2) 품신(稟申)-건의, 수속(手續)-절차

## 3) 일본어 투 표현

우리 법령문은 광복 후 일본 법령문을 급하게 이어받아 일본식 표현의 잔재를 많이 안고 있다. ‘~에 관하여’, ‘~에 대하여’와 같은 일본어 연어(連語)가 남용되고, ‘에’, ‘의’ 등 일본어 조사가 그 문장 성분에 관계없이 어색하게 나타나며, “~에 있어서”와 같은 직역 투 표현이 많다. 이런 일본어 투 표현을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변경하였다.

예시1)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운영에 필요한 사항

예시2) 체납액에 부족한 때 - 체납액보다 적을 때

예시3) 혼인관계의 종료한 때로부터 - 혼인관계가 끝난 때부터

예시4) 적용함에 있어서 - 적용할 때

#### 4) 외래어와 외국어

외래어나 외국어는 원칙적으로 우리말로 바꾸어 쓴다. 다만, 그에 해당하는 적절한 우리말이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어문 규정 중 ‘외래어 표기법’에 맞게 쓴다.

예시) 인프라 - 기반시설, 옵서버 - 참관인, 이메일(e메일) - 전자우편(주소)

#### 5) 권위적·차별적 용어

법령에 쓰이는 권위적·차별적 용어를 민주적 용어로 바꾸어 쓴다.

예시1) 불구자 - 신체장애인, 맹인 - 시각장애인

### (3) 법령문장의 순화

법령문에는 일본어 투의 피동문, 이중부정문 등 자연스럽게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지 않는 표현이 많고, 길고 복잡한 문장, 이중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문장, 중복되어 어색한 표현 등 이해를 어렵게 하는 문장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서는 법령문의 틀 속에서 문장을 최대한 명확하고 쉽게 작성하기 위해서 다음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1) 조나 항은 한 가지 주제로 구성한다.

법령문의 기본 단위인 조나 항은 한 가지 주제로 구성한다. 문장에 많은 내용을 담으려다 보면 문장이 복잡해진다. 조나 항은 한 문장으로 구성하되 단서나 후단을 둘 수 있다.

#### 2) 문장 성분과 어순을 올바르게 한다.

법령문의 문장 성분을 분명히 드러내고, 긴밀한 관계가 있는 구절을 가까이 두며, 주어나 목적어 등 필수적인 성분이 빠져 의미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빠진 내용을 보충해 준다.

#### 3) 가능하면 능동문으로 쓴다.

과다한 피동문의 사용은 법령 문장을 딱딱하고 부자연스럽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사물 주어가 사용된 피동문의 경우 주체가 사람임이 분명한 경우에는 주체를 드러내어 능동문으로 고쳐 쓰고, ‘~에 의하여’ 등의 부사구가 추가되는 피동문도 가급적 능동문으로 고친다.

4) 의미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쓴다.

뜻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문장, 여러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인 문장은 이해하기 어렵고 해석에 혼란을 주므로 명확한 표현으로 고친다. 과도하게 생략된 표현은 충분히 풀어 써 주고, 표현이 뒤섞여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울 때에는 호나 목으로 나누는 방법을 찾아서 정비한다.

5) 한 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문장에서 중복된 표현이나 군더더기, 불필요한 내용을 생략하여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하게 작성하며, 필요한 경우 계산식, 표 등 시각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가독성을 높인다. 이 방안 중의 하나로 법령문장에 계산식을 포함하는 방안과 그림과 같은 시각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 IV. 결 론

### 1. 국어문법의 구현

#### (1) 문법적 표현

법령은 국가의 근본규범으로서 그 사회의 언어적 관습과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나라의 법령 역시 우리 언어의 문법과 체계 및 구문을 활용하고 있음은 당연한 논리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령은 국가의 다양한 입법절차에 따라 제개정되어 공포되어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법령의 용어와 문장은 당연히 국어문법의 적용을 받으며, 법령문의 용어와 문장 역시 이러한 기준과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즉, 다른 분야의 전문용어와 마찬가지로 법령상의 언어 역시 일상언어의 구조와 일치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일상용어와 법령용어는 분리되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관되어 있는 것이며, 법령상의 규범은 일상생활형태를 언어적으로 반영하는 것에 불과할 수도 있는 것이다.

법령에 쓰이는 용어와 문장이 국어적 표준문법에 적합하지 않다면, 일반 국민은 법령문에 대하여 혼란과 몰이해를 유발할 것이며, 민주국가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법치의 근간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국가의 정책집행에 있어서 정책의 신뢰성은 물론 정책수행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최근의 기술발달과 정보통신의 보편화는 의사전달수단의 다양화로 나타나고 있는 바, 새로운 기술변화에 대응하는 방안 역시 고민하여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채팅(chatting)이 이메일은 물론 문자 등에 있어서 비문법적 용어와 문장의 활용 등의 사회적 변화를 법령에서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를 검토하여야 할 시점이기도 하다.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인식구조의 변화를 법령이 어떻게 수용하고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와 기존 언어적 문법에 대한 고려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 (2) 외래어와 외국어의 수용

외래어의 수용은 사회적 변화와 국제화 등에 따른 다른 문화와의 접촉이 증가함에 따른 자연스러운 사회적 현상이기도 하다. 하지만, 법령문에 있어서는 그 접근은 보다 조심스러운 부분이며, 실제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언어가 사회적 보편성을 가지는 것으로 전제로 법령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적인 쓰임의 정도에 관한 판단 등이 필요한 영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외래어의 경우 우리말로 새롭게 조어하는 방법이 적절한 방안인지, 외래어로 인정하고 활용할 것인지 등을 세밀하게 준비하여 판단할 문제라고 할 것이다. 특히, 기존의 우리말에 없거나 표현이 어려운 용어나 문장의 경우에는 적절한 우리말로의 전환에 관한 진지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지만, 전환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역시 게을리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외국어를 빌려 쓰는 문제는 새로운 사물·개념·장소에 대한 표현을 적합한 용어로 대체할 수 있는가에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용어를 새롭게 창출하는 것보다는 빌려 쓰는 것이 쉽고 적절한 경우일 것이다. 빌려 쓰는 외국어가 보편화되면, 외래어가 되고 외래어로 정착하는 경우 법령용어 등 공식적인 우리말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언어파괴의 우려 때문에 외국어의 진입을 막는 것은 부적절한 방안이 될 것이며, 선택(selection)과 수용(acceptance)을 통하여 우리의 주체적인 선택에 대한 신뢰의 과정을 인식하는 노력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 (3) 전문용어의 규범적·기술적 수용

전문용어는 사회의 발달과 구조적 분야별 분화에 따라 생겨나는 것이다. 최근에는 다양한 기술분야의 언어가 나타나고 있으며, 새로운 언어가 창조되기도 하고, 기존의 언어가 다른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있다. 일반적인 용어가 전문용어의 영역에서 선택되기도 하고, 전문용어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용어로 쓰이기도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법령용어에 있어서 전문용어는 그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쓰이고, 우리 용어로 포섭할 수 있는 수준의 용어인 경우에는 법령용어로 쓰이는 것을 수용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수용가능한 전문용어를 법령용어로 수용하는 것은 규범적인 접근은 물론 기술적 접근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즉, 법령용어로 수용하는 전문용어는 해당 분야의 일반성은 물론 국민적 수용의 보편성도 함께 갖추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 2.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국민 참여방안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우리 헌법의 기본원칙인 국민주권에 그 이론적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할 것이다.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제정하고 적용하는 법령의 내용을 일반국민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헌법이 요청하는 국민주권과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법령의 내용을 알기 쉽게 만드는 것은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국민적 요청이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있어서 법령용어와 문장이 가지는 전문성으로 어느 정도 범위까지 일반국민의 참여와 의견수용이 적절한 방안인가에 있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즉, 단순한 의견청취를 통한 참고사항으로서의 역할과 전문적인 영역까지 참여하여 법령용어와 문장의 민주화를 폭넓게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하겠다. 이러한 문제는 기존의 개인으로서의 일반국민의 입법 참여형태가 시민단체나 압력단체의 조직적인 참여로 이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법령용어와 문장의 보편성과 일반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일반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령용어와 문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내용적 성격과도 긴밀한 관련성을 가진다. 이 문제는 법령용어와 문장에 순화에 있어서 일반국민의 참여의 정도는 법령용어와 문장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의견수렴의 과정에 있어서의 접근의 용이성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는 것이라 하겠다. 이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체계화의 과정과 관련하여 민주화의 내용적 부분을 이룬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것이라 하겠다.

일반적으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있어서 일반국민의 참여는 그 가능성에 있어서 매우 어려운 과제에 속하는 것으로서 생활 속에서의 법령용어 사용과 이해의 어려움으로 전문적인 의견의 개진에 한계를 지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최근 시민단체 등의 입법청원운동 등에서 나타나는 일반국민의 입법과정에서의 참여 폭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법령용어와 문장에 대한 기술적 전문성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일반인의 사용과 이해의 어려움을 계량화함으로써 전문용어로서의 법령용어와 일반인의 인식수준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를 병행함으로써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내용과 기준을 마련하는 근거로써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의 인터넷 등 정보화 기술의 보편화는 이러한 가능성을 더욱 열어놓고 있는 바, 기존의 전문 연구자만의 교류와 의견교환이 아닌 일반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방법에 대한 기술적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네티즌으로 대별되는 일반국민의 의견개진은 최근의 사회현상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로 나타나고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방법론에 대한 새로운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그 동안 꾸준히 비전문가로서 우리말 연구와 국어연구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단체와 개인에 대한 의견수렴도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예를 들면, 국어연구에 깊은 관련성이 있는 단체와 대학의 동아리 등에 있어서 우리말 연구동아리들의 법령용어에 대한 구체적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기존의 법령용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형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실제로 일반 우리말에 대한 대학사회의 노력은 알려진 바대로 부분적이기는 하여도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으며, 대학의 우리말 연구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노력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법령용어에 대한 언어학적 넓이와 폭을 확대시키는 것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겠다.

이러한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민주화는 비록 비전문가의 의견일 수 있으나 일반국민이 보다 쉽게 법령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통하여 헌법이 제기하는 민주화와 국민주권 및 실질적 법치국가 형성의 중요한 초석이 된다고 하겠다. 나아가 지방화·분권화 시대의 요청에 있어서 국가법령은 물론 자치법규에 대한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에 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법령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못지않게 직접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법규가 자치법규라는 점에서 법령의 순화정비를 위한 노력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반영하여야 할 부분이고 할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의 한계와 중앙정부의 무관심 등으로 이러한 영역의 연구와 논의가 잘 진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최근의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자치법규의 체계와 내용의 개선과 함께 알기 쉬운 자치법규 개선에도 많은 연구와 논의 및 주민참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3. 민·형법 등 기본법의 전면개정의 요청

최근 법무부와 법제처를 중심으로 기본법인 민법과 형법의 알기 쉬운 법령으로의 개정에 관한 시도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 법무부에서는 2009년 2월부터 시작된 민법개정위원회의 주요 내용 중의 하나가 민법의 한글화와 알기 쉬운 민법조문은 만드는 작업이었다.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2013년에는 법제처를 중심으로 ‘민법 알기 쉽게 쓰기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비 초안을 마련하여 제시한 바 있다<sup>63)</sup>. 이 초안은 ‘법무부 알기 쉬운 민법 개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2015년 8월에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으로 입법예고되었다<sup>64)</sup>. 이 입법예고안은 2015년 10월 8일(19대 국회)에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개정안에 적극 공감하는 검토보고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해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63) 이 초안에 대하여는 법제처, 「알기 쉽게 새로 쓴 민법」, 2013. 12. 참조.

64)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과 주요 내용에 관하여는 윤철홍, “알기 쉬운 민법’ 개정작업의 경과와 주요 내용”, 법조 16년 1월호(통권 712호), 165~195쪽 참조

20대 국회에서 정부는 다시 민법개정안을 각 편별로 나누어 국회에 제출하였다. 총칙부분은 2019년 5월 29일, 물권편은 2019년 8월 9일, 채권편은 2019년 9월 27일, 친족·상속편은 2019년 11월 22일에 각각 제출되었다<sup>65)</sup>. 하지만, 소관상임위원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민법」을 알기 쉽게 개정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은 국회의 논의과정에서 큰 진전을 보지 못하는 것과 별도로 학계와 실무계의 다양한 요구와 논의에도 불구하고 「형법」 개정에 관한 논의는 정부 내부에서도 그 실질적인 진전이나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sup>66)</sup>. 기본법인 민·형법은 법학을 처음 접하는 일반국민이 법학의 전문적인 용어와 문장으로 인식하고 이를 보편적인 형태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개선이 가장 먼저 필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기본법의 성격상 그 진전의 성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 부분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일반 생활 법령에서 쓰이는 법학의 주요 용어와 문장은 민법과 형법을 기본 토대로 형성되며, 재판실무 등 법원과 검찰 등에서 쓰이는 판례의 용어와 문장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일반 국민이 보다 알기 쉽게 민법과 형법을 개정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민법과 형법은 그 내용과 규율범위의 방대함은 물론 일반국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법학이론과 법철학적 논의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함에 따라 알기 쉬운 법령으로의 순화에 관한 논의는 그 중점 논의에서 벗어난 측면이 있다. 최근의 논의는 이러한 이론적·체계적 논의와 별론으로 알기 쉬운 법령으로의 순화를 또 다른 법령문화 형성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어서 그 성과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도 사실이다<sup>67)</sup>. 국회와 정부의 보다 진전된 노력과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65)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BillSearchResult.do>, 2019년 11월 30일)

66) 형법에 관하여는 윤종행, “알기 쉬운 형사법 용어 순화안 제시”, 법학연구(연대 법대 법학연구소) 통권 제 18호제1권, 2008, 143쪽~157쪽 참조.

67)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에 관한 논의는 김문오·홍사만, 「쉽게 고쳐 쓴 우리 민법」, 국립국어연구원, 2003.; 강현철·곽관훈, 「한·일민법전 법령용어와 문장의 비교 및 순화정비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4. 등이 있었으며, 최근의 개정논의에 있어서 법무부 연구용역보고서(미발간) 등이 있다.

## 참고문헌

### I. 국내문헌

#### [단행본]

- 국회사무처, 법제실무, 1990.
- 권영민, 입법실무, 연수사, 1977.
- 대한민국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률안심사사례집-체계·형식·자구-, 1993.
- 박영도, 입법이론연구(I)-입법기초이론과 입법기술-, 한국법제연구원, 1991.
- 박영도, 법령용어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1995.
- 법제처, 법령의 한글화작업에 따른 용어정리, 1973.
- 법제처, 법제처40년사, 1988.
-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1989.
-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1996.
- 법제처, 「알기 쉽게 새로 쓴 민법」, 2013. 12.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7판), 2016.
- 법제처, 알법 10주년백서, 2016.
- 한국법제연구원, 사이버법령에서의 법령용어 및 문장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법제연구원-한국인터넷법학회 공동워크숍 자료집, 2003.

#### [논문]

- 고명운, “법제실무의 기본개념”, 국회보, 국회사무처, 1983. 9.
- 김광해, “조망-국어에 대한 일본어의 간섭”, 『새국어생활』 제5권제2호(여름호), 국립국어원, 1995.
- 김용욱, “철학의 사회성”, 『도올논문집』, 1991.
- 김용진, “구법령정리사업에 관한 소고”, 법제 제218호, 법제처, 1988. 1.
- 김윤한, “번역의 개념과 언어학적 번역론”, 『인문논총』 제42집, 서울대 인문학연구소, 1999.
- 박봉국, “입법의 이론과 실제”, 입법조사월보, 국회도서관, 1989. 1
- 송민, “대통령의 출현”, 『새국어생활』 제10권제4호(겨울호), 국립국어원, 2000.
- 윤종행, “알기 쉬운 형사법 용어 순화안 제시”, 법학연구 통권 제18호제1권, 연대 법학연구소, 2008.
- 윤철홍, “알기 쉬운 민법」 개정작업의 경과와 주요 내용”, 법조 제65권제1호(통권712호), 2016.
- 이덕호, “언어차용에 관한 연구 I”, 『한글』 제169호, 한글학회, 1980.
- 이상돈, “법과 한국어”, 『법과 언어』(법제연구원·한국법철학회·고려대 법학연구원 공동주최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 2002.
- 임중호, “한국에서의 외국법의 계수와 법률용어의 형성과정”, 『외국법의 계수와 법령용어』(한국법제연구원·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주최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 2002.
- 장명근, “현대법제의 역사적 형성과정”, 『저스티스』 제27권제2호, 한국법학원, 1994.

한문수, “입법실체론(상)”, 입법조사월보, 국회도서관, 1974. 5.

## II. 외국문헌

### [단행본]

惣郷正明·飛田良文 편, 明治のことは辞典, 東京堂出版, 1986.

### [논문]

碧海純一, “法學の文章と日本語”, 林大·碧海純一 編, 法と日本語, 有斐閣, 1981.

大久保泰甫, “法の繼受と言語”, 林大·碧海純一 編, 法と日本語, 有斐閣, 1981.

논문 투고일: 2019.10.22

심사 완료일: 2019.11.29

게재 확정일: 2019.12.05

[Abstract]

## Achievements and Prospects of Easy-to-Understand Legislation Project

Hyun Cheol Kang\*

The legislative department's "Easy Legislative Making Project" has provided many achievements for the localization and refinement of legislation from the beginning of 2006 to 10 years. This result is the result of the continuous research and efforts of the legislature, related organizations and academia. These achievements will be the result of steady efforts for the maintenance of legal terms after liberation based on the research on legal terms.

In this paper, we attempted to examine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Korean legal terminology, purifying problems, sentence structure, and basic forms of legal texts. Indeed, many terms and sentences are used in the form of statutes, but there are no practical and established theoretical studies on them. In addition, we analyzed the achievements and future tasks of the Korea Legislation Agency and the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This is because it is a historical study to purify the legal terminology, and it is necessary to summarize the historical achievements as opposed to the recent various research achievements. In addition, I hope that it will be a chance to examine once again the goals to be integrated and maintained in legal terms and sentences.

Based on these theories and historical studies, the basic principles and performance standards of the current legislative development project were examined. The basic principle was to make easier laws, ordinances that are clear in meaning, grammatically correct and natural in expression. The specific contents of the maintenance standards were examined in the Korean language of legal texts, difficult Chinese and Japanese kanji and expressions, foreign language and foreign language, the legalization of legal terms for authoritative and differential terms, and the text of legal texts. Lastly, based on the analysis and results of legal terms and sentences, the direction of the legislative making business in terms of Korean grammar is presented in terms of grammatical expression, foreign and foreign language acceptance, and normative and technical acceptance of terminology. . At the same time, the legislative project, which is easy to understand, was not limited to the participation of experts in the future.

**Key Words:** Legal terminology, Legal sentence, Law Terminology maintenance business, Ministry of Legislation

\* Senior Principal Research Fellow,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